긴급입찰 사유서

□ 사업명: MMCA 지역동행 명작전《조지아 오키프와 미국 모던 아트》전시작품 반입 및 설치, 철거 용역

□ 긴급입찰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긴급사유 및 법적근거 :

○ 국립현대미술관과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 부산현대미술관(지역동행 순회기관) 공동주최 전시 MMCA 지역동행 명작전《조지아 오키프와 미국 모던 아트》전의 전시작품 반입 및 설치, 철거 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품 반입 예정일(2026년 11월 1일) 및 전시 개막일(2026년 11월 11일)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이 필요함

○ 위와 같은 사유로 입찰 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진행하고자 함

○ 법령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2호

국립현대미술관장